

경조금 지급 규정

개정 : 2003. 10. 1.
개정 : 2005. 7. 20.
개정 : 2013. 3. 1.
개정 : 2020. 9. 24.
개정 : 2026. 5. 2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 5. 29.>

제2조(지급대상) 이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지급의 구분) 경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26. 5. 29.>

1. 결혼축의금
2. 수연축의금
3. 조의금
4. 재해위로금
5. 삭제 <개정 2026. 5. 29.>

제4조(지급기준) ① 경조금 지급내역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6. 5. 29.>

② 제1항의 경조금 외에 총장 명의의 축하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낼 수 있다. 다만, 범위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6. 5. 29.>

제5조(지급방법) 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 9. 24.>

제6조(지급절차) ① 제3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교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교직원은 경조금 신청서(별표2)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3개월 이내에 경영지원팀에 제출한다. <개정 2026. 5. 29.>

② 삭제 <개정 2026. 5. 29.>

제7조(지급제한) ① 수연(회갑, 칠순, 팔순, 등) 중 개인별 1회로 제한한다.

②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. <개정 2026. 5. 29.>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경 조 금 지 급 내 역

(단위 : 원)

구 분		금 액	지 급 조 건
결 혼	본 인	200,000	1. 법률혼에 한함 2. 삭제 <개정 2026. 5. 29.>
	자 녀	100,000	
수 연	본인 및 배우자	200,000	수연(회갑, 칠순, 팔순 등) 중 개인별 1회에 한함.
	부 모 (본인 및 배우자)	200,000	
조 의	본 인	500,000	
	배 우 자	300,000	
	부 모 (본인 및 배우자)	200,000	
	자 녀	100,000	
재 해	반과 이상	300,000	재해는 풍수해, 화재, 천재지변 등을 말함
기 타		삭제 <개정 2026. 5. 29.>	

(별표 2)

경조금 지급 신청서

소 속		직급(직위)		성 명	
-----	--	--------	--	-----	--

경조대상자 성명	○○○
본인과의 관계	(본인, 자녀, 배우자, 부모, 배우자 부모 등)
경조일자	0000.00.00
경조내용	(결혼/사망/수연/재해)
지급계좌	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계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계좌
계좌번호	(기타계좌 선택 시 기재)

상기의 내용에 대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경조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인) 또는 (서명)

금강대학교 총장 귀하

※ 관계서류 :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진, 부고장, 증명서 등) 필히 제출

※ 지급계좌 : 신청자 본인 계좌